

# 세아특수강 ESG Report 2021

---



**SēAH**

## ■ 기업개요

## ■ ESG 실천현황

1. 환경 (Environment)
2. 사회 (Social)
3. 지배구조 (Governance)





## 기업개요



# Business Overview

**설 립** 1986년

**사 업 장** 포항(본사), 충주, 서울, 중국  
(난통, 텐진), 태국

**매 출 액** 6,550억 원 (국내 4,718억 원)

**총 자 산** 5,524억 원 (국내 4,278억 원)

**생 산 품** 냉간압조용 선재(CHQ WIRE),  
마봉강(CD BAR),  
스테인리스 봉강(STS BAR),  
BAR TO BAR,  
PEELED BAR

**CHQ WIRE, CD BAR 시장 점유율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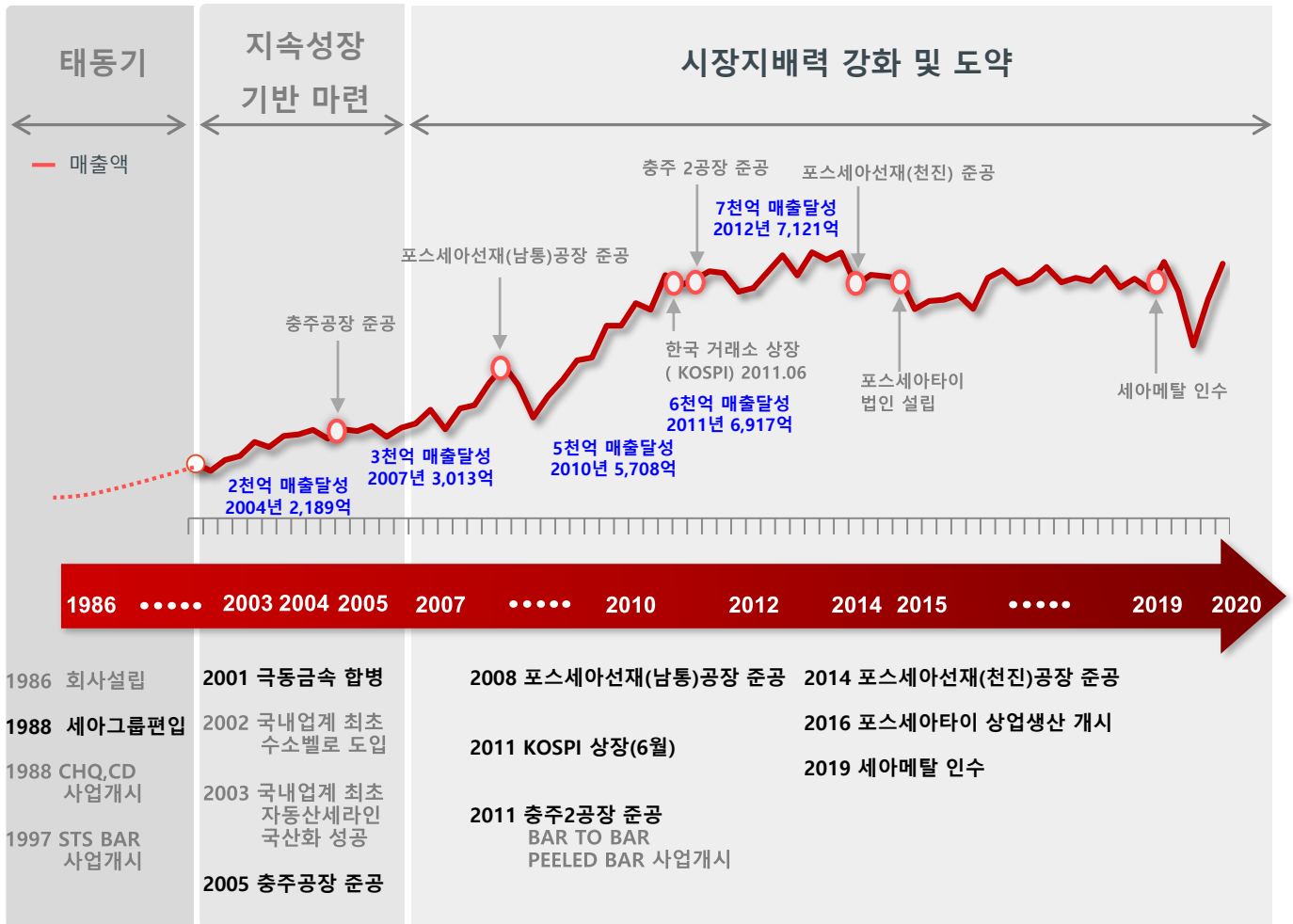
**선재 시장점유율 40%에 이르는 국내 제일의  
부품소재 기업**

**우수한 설비와 기술 경쟁력으로 최고의 품질 실현**

**소형부터 대형 부품 소재에 이르는 차별화된  
제품 포트폴리오 구축**



# History



##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Global 종합부품소재 기업 세아특수강

세아특수강은 1986년 설립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품질의 특수강 소재를 생산하여 그 동안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자동차 핵심보안부품의 소재를 국산화하는 등 외화 절감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함은 물론, 기간산업인 부품소재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며 자동차, 전기, 기계산업 등 오늘날 한 국 산업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 달려야 할 시간이 더 많기에 세아특수강은 지속적인 경영혁신활동과 끊임없는 기술개발,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고객중심경 영을 바탕으로 세계 초일류 기업,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Global 종합부품소재 기업이 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Business Field

## 국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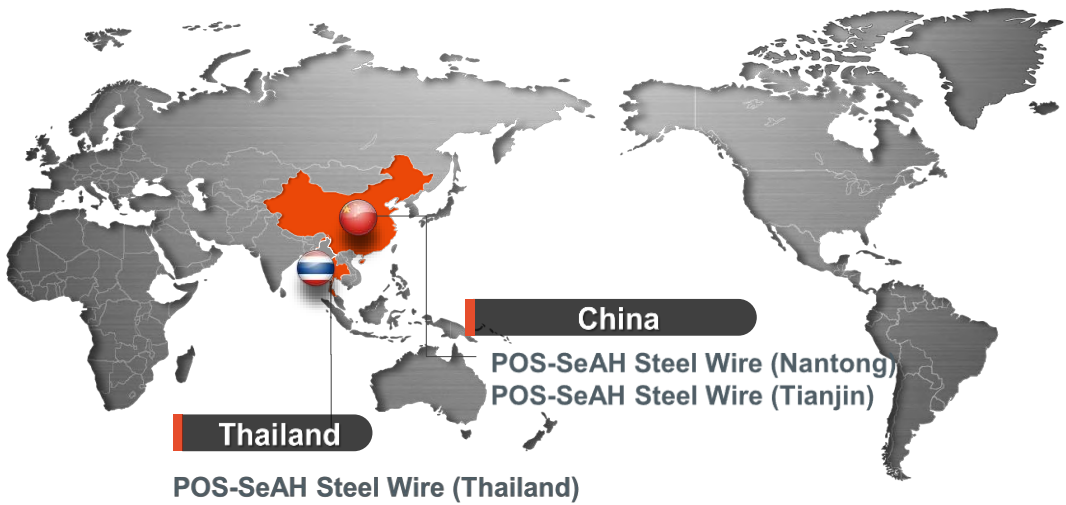


|    |         |                           |
|----|---------|---------------------------|
| 포항 | 생 산 품   | CHQ WIRE, CD BAR, STS BAR |
|    | 수 요 처   | 자동차 / 전자 / 기계 / 건설        |
|    | 생 산 능 력 | 26만 톤                     |

|      |         |                    |
|------|---------|--------------------|
| 충주 1 | 생 산 품   | CHQ WIRE           |
|      | 수 요 처   | 자동차 / 건설 / 기계 / 건설 |
|      | 생 산 능 력 | 22만 톤              |

|      |         |                                         |
|------|---------|-----------------------------------------|
| 충주 2 | 생 산 품   | CD BAR, STS BAR, BAR TO BAR, PEELED BAR |
|      | 수 요 처   | 자동차 / 전자/ 건설기계 / 조선                     |
|      | 생 산 능 력 | 9만 톤                                    |

## 해 외





## ■ ESG 실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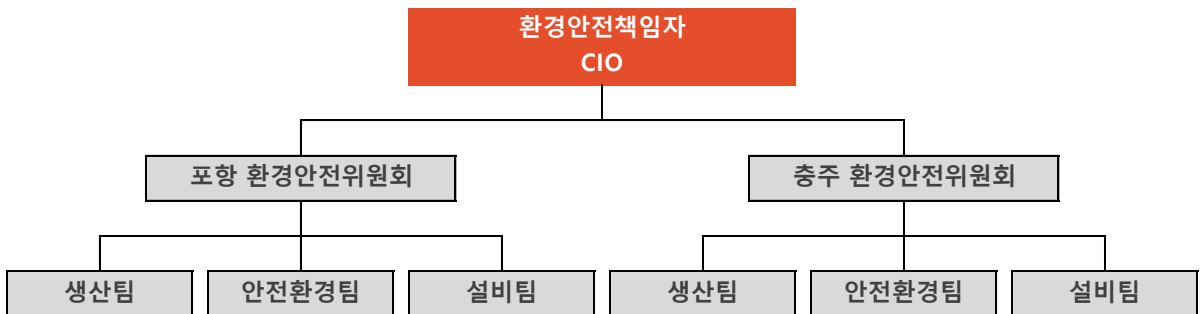
1. 환경 (Environment)
2. 사회 (Social)
3. 지배구조 (Governance)

# 1. 환 경

## (1) 환경안전 조직

세아특수강은 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경영활동으로 인한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쾌적한 근로환경 조성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 환경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환경안전책임자(CIO)를 중심으로 환경, 보건 경영에 관한 회사의 방침을 수립하고, 각 사업장의 유관부서들이 대표이사의 환경, 보건에 관한 의지를 구성원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선진기업과 동종업계의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회사의 운영방향과 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2) 원부자재 저감 활동

세아특수강은 적극적인 원·부자재 저감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적극적인 탄소 배출 저감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 산세 CA공정을 In-Line 및 Off-Line Shot Blast 공정으로 대체

본 활동을 통해 공정내 염산 사용량을 저감하여 친환경 제품 제조 공정을 실현하며 공정 단위의 감소와 최종 제품 생산량 확대를 통해 동시에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 • 공장내 조명 교체

기존 메탈할라이드 조명에서 LED조명으로의 전면 교체를 통해 60% 이상의 전력 절감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 • 재증발 증기 및 응축수 회수와 재활용 시스템 도입

보일러에서 공급된 스팀의 사용 후 잔존 열 효율을 응축수 형태로 회수 받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LNG 사용량을 10% 이상 절감 하였습니다.



# 1. 환 경

## (3) 친환경제품 구매

### • 흑연패삭강 구매

흑연패삭강은 세계 최초로 유해물질인 납 성분 대신 흑연을 넣은 패삭강 입니다.

패삭강은 자동차, 전자,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단면이 원형인 강재로, 가공이 쉽도록 납·황·인 등을 첨가하여 제조되는 특수강입니다. 패삭강은 너무 강하면 가공성이 떨어지고, 가공시간도 긴 것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정밀한 모양을 위해 높은 가공성을 이유로 산업 시설에서 납패삭강을 사용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납패삭강의 납이 인체에 축적되면 염증이나 신경계 손상 등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내 P사에서 개발한 흑연패삭강은 패삭강의 주요 성분인 납을 흑연으로 대체하여 기존 납패삭강의 우수한 절삭성과 가격 경쟁력을 극복했습니다.

세아특수강에서는 '19년을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흑연패삭강의 구매를 늘려 납 사용에 대한 전세계적인 규제에 대비하는 한편 작업자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세 구매이력 對外秘)

## (4) 친환경제품 매출

### • 비인계피막 제품

비인계피막이란 인(P) 성분을 제어하여 침인(浸燐)에 의한 강도 저하가 없는 CHQ 선재 입니다. 비인계피막 제품은 피막시 인(P)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사에서 탈인공정이 생략 가능하며 열처리후 침인현상 발생이 전혀 없어 고강도 볼트 제조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비인산계 피막 대비 피막 전체 중량이 감소되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 • 오일청정피막 제품

오일청정피막이란 피막 가루 발생이 없어 단조 작업시 포밍 오일 오염 및 분진이 개선된 친환경 CHQ 선재 입니다. 또한 단조 작업시 사용되는 포밍유의 수명이 증대되며, 피막 가루에 의한 분진 발생이 없어 작업 환경이 개선되고 금형 수명을 증대시키는 친환경 제품입니다.

| 매출     | 19년   | 20년   | 21년상반기 |
|--------|-------|-------|--------|
| 오일청정피막 | 2.4천톤 | 1.3천톤 | 1.0천톤  |
| 비인계피막  | 0.3천톤 | 0.2천톤 | 0.2천톤  |

1. 환 경

(5) 환경목표

환경경영을 통한 CLEAN 사업장 구축

| CLEAN 사업장 구축                                                                  | 환경오염물질 최소화                                                                           | 에너지 절감 및 원가절감                                                                                             |
|-------------------------------------------------------------------------------|--------------------------------------------------------------------------------------|-----------------------------------------------------------------------------------------------------------|
| <div>- 예방적 환경활동 강화</div> <div>- 화학물질 관리 명확화</div> <div>- 비상 대응 및 적응력 강화</div> | <div>- 공정별 오염인자 저감활동</div> <div>- 용수 사용량 실시간 관리</div> <div>- 폐염산,폐유 종류별 원단위 관리</div> | <div>- 폐기물 종류별 원단위 관리</div> <div>- 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div> <div>- 생산성 향상, 가동시간 관리</div> <div>- 소모자재 원가절감</div> |

환경사고 ZERO, 오염물질 최소화

(6) 친환경 투자 계획

• 2021년 환경경영 실천을 위한 투자계획

(포항공장)

| 투자명              | 목적                 | 투자예산 |
|------------------|--------------------|------|
| 스크러버 신설 및 송풍기 교체 | 산세장 환경개선 및 환경법규 준수 | 3.5억 |
| 환경오염 방지시설 유지개선   | 대기오염물질 처리효율 개선     | 1.4억 |
| 합계               |                    | 4.9억 |

(충주공장)

| 투자명              | 목적                 | 투자예산 |
|------------------|--------------------|------|
| 스크러버 신설 및 송풍기 교체 | 산세장 환경개선 및 환경법규 준수 | 2.6억 |
| 환경오염 방지시설 유지개선   | 대기오염물질 처리효율 개선     | 1.7억 |
| 합계               |                    | 4.3억 |

# 1. 환 경

## (7) 친환경 활동

### • 사업활동 관련 환경 영향저감 및 생태환경의 친환경적 관리 활동

환경영향 저감 및 친환경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공장에서 사용되는 공업용수를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                       |                     |
|-----------------------|---------------------|
| 2020년<br>공업용수<br>재이용율 | 포항공장 재이용율 : 81.43%  |
|                       | 충주1공장 재이용율 : 87.22% |
|                       | 충주2공장 재이용율 : 95.91% |

### • 온실가스 및 에너지 사용량 관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을 기반으로 세아특수강의 포항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산정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관련법에서 정한 제3자 검증 기관에서 매년 검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 사용량의 경우 정확도 높은 데이터를 산출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 구분    | 연간 온실가스배출량(tCO2e) |                  |        | 연간 에너지사용량(TJ) |     |    |     |
|-------|-------------------|------------------|--------|---------------|-----|----|-----|
|       | 직접배출<br>(Scope1)  | 간접배출<br>(Scope2) | 총량     | 연료            | 전기  | 스팀 | 총량  |
| 2020년 | 9,880             | 13,847           | 23,727 | 194           | 209 | 63 | 466 |
| 2019년 | 11,406            | 15,410           | 26,816 | 224           | 232 | 70 | 526 |
| 2018년 | 10,985            | 15,514           | 26,499 | 216           | 238 | 71 | 525 |
| 2017년 | 11,163            | 14,515           | 25,678 | 219           | 243 | 73 | 535 |



# 1. 환 경

## (8) 환경 경영방침

전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의 기업들에게 친환경사업과 에너지 절감 활동은 환경보호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만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세아특수강은 온실가스 절감을 통한 지구 온난화 방지와 범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전사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조직 및 체제를 확립하여 ISO 14001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① 현재 적용되고 향후 적용이 예상되는 환경관련법 뿐 아니라, 회사가 준수 하기로 한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 ② 환경사고 방지를 위해 위해 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시 운영한다.
- ③ 환경경영 방침 및 목표를 이해하고 실행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④ 모든 관련 이해자 및 관계자와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환경경영 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며, 협력사와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한다.
- ⑤ 작업장의 유해환경 및 불안정한 상태를 제거함으로써 임직원과 협력사의 환경사고를 완전히 일소한다.

**SeAH** 세아특수강

대표이사 서 영 범



1. 환 경

(9) 환경활동계획 및 평가체계

| 활동계획                                                        | 세부추진계획                                                                                                                                                                                                                                                                                                                  | 추진일정    |    |    |    |
|-------------------------------------------------------------|-------------------------------------------------------------------------------------------------------------------------------------------------------------------------------------------------------------------------------------------------------------------------------------------------------------------------|---------|----|----|----|
|                                                             |                                                                                                                                                                                                                                                                                                                         | 1Q      | 2Q | 3Q | 4Q |
| 1. 환경사고 ZERO                                                | <b>1.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의 명확화</b><br>1) 화학물질 사용공정 위험성평가 실시<br>[염산, 가성소다]<br>2) 취급 및 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실시<br>3) MSDS 교육실시<br><b>2. 비상시 대응 및 적응능력 강화</b><br>1) 점검 및 훈련실시[1회/年 훈련]                                                                                                                                                    | ←.....→ |    |    |    |
| 1. 배출허용기준 40% 이내 운영                                         | <b>1. 공정별 오염인자 저감활동</b><br>1) 염산농도표준관리[폐기시점 측정]<br>2) 누기부 집중점검[1회/주]                                                                                                                                                                                                                                                    | ←.....→ |    |    |    |
| 2. 생산원단위 대비 폐수 발생량, 처리비 5% 감소                               | <b>2. 용수 사용량에 대한 실시간 관리</b><br>- 용수 사용량 피드백실시[1회/일]                                                                                                                                                                                                                                                                     | ←.....→ |    |    |    |
| 1. 에너지 목표관리 실시<br>- 원단위 관리<br>전력비 36.7kw/톤,<br>LNG 33.2m³/톤 | <b>1. 에너지 목표관리제 지속추진</b><br>1) 역률 90% 이상관리<br>2) 전력 원단위 달성을 위한 절감<br>- 조명 TIMER 관리<br>- LED 조명 설치                                                                                                                                                                                                                       | ←.....→ |    |    |    |
| 2. 공정낭비 제거                                                  | <b>2. 생산성 향상 및 가동시간의 관리</b><br>1) 생산성 향상으로 염산 사용원단위 감소<br>- 염산 10% 감소<br>2) 신규 공정라벨 적용으로 페라벨지 감소<br>3) 집진기 설비 개선을 통한 SHOT BALL 낭비 최소화<br>4) 폐 BAG FILTER 및 폐 Cartridge 감소<br>5) 폐 TAG 수거 및 재활용<br><b>3. 폐기물 종류별 원단위 관리</b><br>1) 소모성 부자재 사용 및 배출량 저감활동<br>2) 염산 건욕시 농도관리<br>3) 주요 누유부 개선활동<br>[봉강 방청방식, 오일포집 받침대, 설비개선] | ←.....→ |    |    |    |

각 팀별 환경안전 활동은 각 항목별 분기 실적이 환경안전책임자에게 보고되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환경안전위원회의 분기별 평가를 통해 관리가 취약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하며 개선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실적을 최종 평가하여 실적을 누적 관리하여 환경 목표 및 근로자의 깨끗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2. 사 회

### (1) 품질 · 환경 · 안전 방침

#### • 경영이념

-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한다
- 구성원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정한 인사와 인재양성에 노력한다
- 사회적 기업으로서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역할과 의무를 다한다

#### • 경영방침

-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

#### • 품질방침

- 품질경영시스템의 운영 목표는 고객 만족이다
- 고객 만족을 위해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 환경/안전 방침

- 환경경영시스템의 운영 목표는 친환경적인 사업장 운영을 통한 환경 보호이다
- 환경 보호를 위해 환경영향과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환경오염과 재해를 최소화 한다

품질, 환경/안전 방침의 실현을 위하여, 대표이사는 경영대리인을 임명하여 경영 시스템의 운영 및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고, 모든 구성원이 경영 시스템을 운영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당사의 품질, 환경/안전 경영 시스템은 고객과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법규와 환경 경영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하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로 인한 피해와 위험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안전 요소를 제품의 설계 및 제조 표준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영 시스템의 프로세스 적절성을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며, 지속 가능한 ESG 기반의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을 보장한다.

**SeAH** 세아특수강

대표이사 서 영 범



### (2) 준법경영 선언문

#### 「준법경영 선언문」

세아그룹 임직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힘입어 세아그룹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철강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고에 먼저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세아그룹은 지난 60여 년 동안 정직과 신뢰라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기업 문화를 내재화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도 기업의 목표 달성 못지않게 과정에서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해져, 비윤리적으로 경영 활동을 답습하는 기업은 더 이상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정부의 여러 감독 기관에서는 기업들의 컴플라이언스 위반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고, 규제 법령과 처벌 수위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 환경에서 컴플라이언스는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임직원 개개인의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수호해야 할 가치이자, 경영 활동과 업무 수행의 전 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기준이라 할 것입니다.

컴플라이언스 강화는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국내외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각국의 사법 당국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임직원 개인은 물론 회사에도 무거운 처벌과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임직원의 행위나 사소한 실수 하나하나가 개인뿐 아니라 회사에도 중대한 손실을 가할 수 있고, 60여 년간 수많은 임직원들의 노고를 바탕으로 구축해 온 기업 가치를 크게 실추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아그룹은 설립 초창기 때부터 오직 ‘정직’과 ‘신뢰’야말로 지속 가능한 기업 발전의 핵심적인 요소임을 깊이 인식해왔습니다. 이제는 과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21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준법경영을 전사적 차원의 핵심가치로 선포하고, 세아의 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과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 (2) 준법경영 선언문

우리는 이를 위해 2020년부터 회사 내 주요 실무 프로세스를 검토하여 컴플라이언스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컴플라이언스 담당 조직의 기능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모든 임직원이 대외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법, 공정거래법, 부정청탁금지법을 포함한 반부패법령, 환경·산업안전법령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위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예방하고, 내부적으로도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 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임직원 간 상호 존중 문화 확립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기업 활동 관련 규제 다각화, 환경 보호 및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등을 강조하는 사회적 기조에 따라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될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는 규제 대응 중심의 컴플라이언스를 넘어서 주주와 고객을 위한 기업 가치 실현 차원의 ESG 경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스스로가 ‘정직’, ‘준법’, ‘투명성’, ‘컴플라이언스’의 가치를 중시하고, 철저히 준수하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만약 일상적인 업무 활동에서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실 또는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거나, 컴플라이언스 판단이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반드시 컴플라이언스 조직이나 법무팀과 사전에 상의하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세아그룹이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기업, 고객과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기업,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기업으로 더욱 성숙하게 거듭나는 길은 임직원 모두가 세아의 일원으로서 높은 긍지와 윤리의식을 갖고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에 달렸습니다.

따라서 세아그룹은 컴플라이언스 중심 경영을 엄중히 선언하고, 모범적인 준법 기업 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경영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강력하게 실천되어 소기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아인 모두 최선을 다 합시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1일

회장 이 순 형

## 2. 사 회

---

### (3) 준법경영 헌장

#### 준법경영 헌장

2021. 7. 1.

■ 준법경영의 기본적인 절차와  
제반 사항을 정한 최상위 규범  
(Code Of Conduct)

세 아 그 룩

## 2. 사 회

---

### (3) 준법경영 헌장

#### 「서 문」

세아그룹의 모든 임직원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준법경영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지향하고, 제반 법 규정 및 내규를 준수하여 건전한 경제·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준법경영 헌장을 발표하고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 1. 제정 목적

본 준법경영 헌장(이하 “헌장”)은 세아그룹(이하 “회사”) 및 그 임직원(이하 “임직원”)에게 업무 수행 과정 및 회사 생활에서 준법에 근거한 의사 결정과 판단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준법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적용 범위

- ① 본 헌장은 국내외 법인 및 지사,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하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되며, 필요 시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헌장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본 헌장이 적용되는 회사 내 모든 임직원은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는 동시에 본 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③ 본 헌장의 내용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본 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 (3) 준법경영 현장

#### 「준법경영 현장」

##### 1. 임직원의 행동 원칙

- ① 임직원은 정직, 열정, 실력을 갖춘 세아인으로서 준법경영을 경영 판단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② 임직원은 회사가 추구하는 준법경영의 원칙을 충분히 인지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반 법령을 비롯해 회사의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회사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한다.
- ③ 임직원은 공정한 경쟁이 상호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여 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④ 임직원은 동료 간, 부서 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한다.
- ⑤ 임직원은 깨끗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환경 보호에 앞장선다.
- ⑥ 임직원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건실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 2. 임직원의 의무와 책임

- ① 임직원은 공(公)과 사(私)를 엄격히 구분하며, 목적과 이유를 불문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알선, 청탁, 특혜 부여, 금품, 접대, 향응, 편의 제공 등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주거나 받지 아니한다.
- ② 임직원은 회사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회사의 정보 자산, 영업 비밀, 보안이 필요한 정보 등을 사전 승인 없이

## 2. 사 회

---

### (3) 준법경영 현장

제3자 또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으며, 보안과 관련된 회사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 ③ 임직원은 경쟁 업체에 대한 정보를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며, 거래상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협력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탈취하거나 유용하지 아니한다.
- ④ 임직원은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임직원 상호 간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일체의 언어적, 신체적 행위가 없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 ⑤ 임직원은 회사와 임직원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 회사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행동한다.
- ⑥ 임직원은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⑦ 임직원은 상사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최선을 다해 이행하도록 노력하며, 직위를 이용해 회사의 업무와 직간접적 관련이 없는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한다.
- ⑧ 임직원은 회사의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위험 예방을 도모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환경 및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3. 회사의 의무와 책임

- ① 회사는 임직원 자신이 맡은 업무에 대해 외부의 부당한 압박, 강요 등이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율적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효율적인 교육 투자를 통해 임직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
- ②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준법경영 체계 내용을 제공하고 교육하며, 준법경영 방침을 이행할 수 있는 조직 문화와 업무 환경을 조성한다.



## 2. 사 회

---

### (3) 준법경영 현장

- ③ 회사는 정당하고 청렴한 업무 수행을 독려하기 위해 전 임직원에게 제반 법령을 비롯해 회사의 규정 및 지침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준법경영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④ 회사는 임직원 스스로가 제반 법령을 비롯해 회사의 규정 및 지침 준수 여부를 적절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해야 한다.
- ⑤ 회사는 제반 법령을 비롯해 회사의 규정 및 지침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보고한 임직원을 보호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⑥ 회사는 제반 법령을 비롯해 회사의 규정 및 지침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회사의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⑦ 회사는 교육, 승진, 처우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 학력, 연령, 종교, 출신지역,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 ⑧ 회사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보건, 환경 등의 위협에서 임직원을 보호하는 안전 수칙과 기준을 정립하여 임직원에게 공지해야 하며, 회사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회사가 제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 사 회

### (4)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문

세아그룹의 인재상 "합리적이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 따라 세아특수강의 모든 임직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할 것이며, 세아특수강과 경쟁하는 모든 경쟁사와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함께 동반성장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경쟁사와의 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 • 경쟁사와의 공정거래

우리는 경쟁사와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자유 시장 질서를 존중하며,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 입니다.

#### • 지침

##### ① 선의의 경쟁

- 부당하게 경쟁사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지 아니한다.
- 경쟁사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출하지 아니한다.

##### ② 부당공동행위 금지

- 경쟁사와 가격,종류,규격등을 담합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담합의 행위는 아래에 명시한다.
- 경쟁사에게 향응 및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으며, 경쟁사간의 정보는 건전한 방법으로 교류한다.

\* 담합의 행위

| 유형           | 내용                                                   |
|--------------|------------------------------------------------------|
| 가격의 결정 및 변경  | 가격인상, 인하, 유지등 행위를 할 것을 직간접적으로 합의하는 경우                |
| 거래의 제한       | 사업자 별로 상품의 생산, 출고등 거래를 제한하기로 공동으로 합의하는 경우            |
| 시장의 분할       | 사업자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의 제한을 두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                |
| 설비의 제한       | 사업자간 설비의 규모를 합의하거나, 설비의 증설 및 신설에 대해 방해·제한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
| 상품의 종류·규격 제한 | 사업자간 제품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경우                              |
| 입찰 담합        | 입찰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자간에 낙찰가, 투찰가등 입찰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합의하는 경우 |
| 기타           | 다른 사업자를 방해하는 기타 행위                                   |

##### ③ 부당고객유인의 금지

- 경쟁사간의 이해관계자에게 향응, 금품 등 부정청탁을 제공 및 제안하지 아니한다.
- 관행에 어긋나는 이익의 제공을 통해 경쟁사의 고객을 유인하지 아니한다.

※ 공정거래 관련 교육 내용은 '21년 하반기 지주회사 주관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 2. 사 회

### (5) 노사관계

세아특수강의 노동조합은 1989년 3월 21일 설립 이래 33년 동안 무분규 협상을 이어오고 있으며, 노사간 선진 문화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 노동조합 가입인원 및 가입률

| 사업장       | 포항   | 충주   | 합계   |
|-----------|------|------|------|
| 노동조합 가입인원 | 128명 | 33명  | 168명 |
| 노동조합 가입률  | 100% | 100% | 100% |

### (6) 협력업체 간담회

세아특수강은 분기별 협력업체 간담회를 통해, 정기적인 불만처리 및 협의채널을 운영 중으로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일시         | 참석자                              |
|--------|------------|----------------------------------|
| '20.1Q | 2020-04-21 | 세아특수강 관리자 7명 & 1,2공장 협력업체 대표자 5명 |
| '20.3Q | 2020-09-15 | 세아특수강 관리자 8명 & 1,2공장 협력업체 대표자 5명 |
| '20.4Q | 2020-12-22 | 세아특수강 관리자 7명 & 1,2공장 협력업체 대표자 5명 |
| '21.1Q | 2021-03-02 | 세아특수강 관리자 8명 & 1,2공장 협력업체 대표자 5명 |
| '21.2Q | 2021-05-27 | 세아특수강 관리자 7명 & 1,2공장 협력업체 대표자 5명 |

## 2. 사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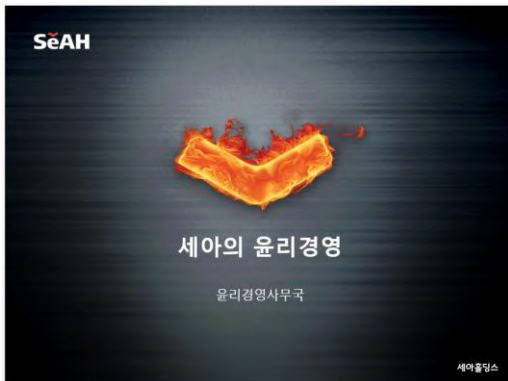
### (7) 윤리경영(부패방지) 교육실시

세아특수강은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세아인의 윤리경영(부패방지원칙 포함)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 윤리경영(부패방지) 원칙에 관련된 내용을 공유 및 교육 하고 있습니다. 교육 실시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신입사원     | 사무직                    | 기능직                    |
|----------|----------|------------------------|------------------------|
| 교육<br>내용 | ESI윤리수사대 | 팀별 윤리경영 교육<br>(반기 2HR) | 팀별 윤리경영 교육<br>(반기 2HR) |
|          |          | 성희롱예방교육                | 성희롱예방교육                |
|          |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보호교육               |
|          |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 ※부패방지 교육내용

- 19년 상반기 :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금품)를 받는 행위
- 19년 하반기 : 거래 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
- 20년 상반기 :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 20년 하반기 : 교육자료 배포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시행)
- 21년 : 세아러닝클라우드內 세아특수강 윤리경영 캠퍼스 개설 및 상시 교육중
- 매년 2회 협력사에 윤리경영 실천 안내문 발송



세아특수강  
04039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동 45 세아타워 24층  
T. 02-6970-0200 F. 02-6970-0208

주 소 : 인천광역시  
지 목 : 세아 윤리경영 실천 안내문

#### 세아 윤리경영 실천 안내문

1. 평소 저희 세아특수강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협조에 무한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 세아그룹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윤리경영을 신봉하고 전 계열사가 윤리경영을 도입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세아특수강은 투명경영, 상생경영을 통해서 더욱 성장, 발전함을 물론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사회와 고객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하여 세아특수강의 윤리경영 시행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그 의미와 실천의지를 깊이 체하여 주시고 귀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드리며, 귀사의 우람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세아특수강 윤리경영

##### 투명경영, 윤리경영

세아는 기업의 원칙을 지키는 윤리적 기업문화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지향하는 자유시장 경제의 질서를 중시하며 법규정을 준수합니다. 이를 통해 동부한 가치를 창조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발전함으로써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하는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명절, 기념일 등에 선물을 하지도 받지도 않는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사례(금품) 수수 금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직·간접적인 사례(금품)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여 정중히 거절하거나 되돌려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협력회사 및 거래처 선정 및 계약에 있어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명등, 부당 대우, 불친절한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 제언 및 제보처 안내

① 세아그룹 계열회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을 이해할 및 전하로 제언·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가치 증대,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건의 사항
- 불합리한 관행과 비효율적인 요소의 개선사항
- 부당한 업무처리, 기타 간접한 기업문화에 위배되는 사항

② 제언 및 제보처

- 홈페이지 : www.seah.co.kr > 나눔 > 윤리경영 > 윤리경영제언센터 > 제보하기
- 전화/팩스(윤리경영사무국) : 전화 (02) 6970-0142 / 팩스 (02) 6970-0127

세아특수강

- 홈페이지 : www.seahsp.co.kr > 윤리경영제언센터(하단) > 제보하기
- 전화/팩스(윤리경영실전사무국) : 전화 (02)6970-0109 / 팩스 (02)6970-0209

※ 제언·제보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호합니다.

주식회사 세아특수강

대표이사 전 주 병

www.seahsp.co.kr

## 2. 사 회

### (8)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활동 실시 내역

- ① 안전보건을 회사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적극 실천한다.
- ②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법적규제에 적극 대응한다.
- ③ 지속적인 위험성평가 과정을 통해, 안전보건 RISK를 사전에 평가하고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적극 수립하여 실천한다.
- ④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활동을 통해全體직원의 안전보건의식과 실천능력을 강화한다.
- ⑤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현장중심의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 ※ 안전보건활동 실시 내역

- ① 비상상황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비상조치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 ② 일일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현장의 안전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개선 조치하고 있음
- ③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인자의 노출수준을 파악 및 개선을 통해 쾌적한 사업장 조성에 힘쓰고 있음  
[작업환경측정,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청력보존프로그램 운영 등]
- ④ 공생협력프로그램을 통해 사내협력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월간 협의체 정기회의 실시, 주간 현장점검, 분기별 합동 안전보건 점검]
- ⑤ 월 2회 간호사 정기 방문을 통해 질병 유소견자 추적관리, 전 직원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 ⑥ 쉐공정 대상으로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해 사업장 內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3. 지배구조

#### (1) 기업지배구조헌장

##### 前文

주식회사세아특수강(이하 “회사”)는 안정과 다변화에 대응하여, 끊임없는 발전을 통한 도약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적극적인 ESG개선 활동을 통하여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며, 더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회사는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바탕이 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본 기업지배구조 헌장을 제정한다.

회사는 본 헌장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균형 있는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 제 1장 주주

##### 제 1조 [주주의 권리]

- ① 주주는 주주권에 기반하여 주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하에 결정되어야 한다.
- ③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장소, 일시 및 의안의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안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주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에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2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 ①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주주는 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쉽게 설명되어야 하며,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회사는 공시 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한다.
- ③ 회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여야 한다.

##### 제 3조 [주주의 책임]

- ① 주주는 회사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 지배구조

---

②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 제 2장 이사회

① 이사회는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기구로서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관련 법령, 정관이 정하는 주요한 사항을 제외하고 대표이사 또는 산하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제 5조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

① 이사회는 내용 논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운영되기에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이사회에는 독립적이고 실질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를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 및 경험을 지닌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

### 제 6조 [사외이사]

① 사외이사는 이사회를 통해 회사의 의사결정에 독립적으로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지원 및 감독한다.

② 사외이사는 필요 시 회사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외이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다.

③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 7조 [이사의 운영]

① 이사회는 분기 1회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한다.

③ 회사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유지·보관한다.

④ 회사는 개별 이사의 출석률과 주요 공시 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여부 등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

⑤ 이사는 필요 시 원격통신수단(화상회의 등)을 활용하여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 3. 지배구조

---

#### 제 8조 [이사회 내 위원회]

- ① 이사회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각 위원회는 각 이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 제 9조 [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이 회사와 주주에게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 ② 이사는 직무상 얻은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 제 10조 [이사의 책임]

-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회사는 이사의 책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 제 11조 [평가의 보상]

- ① 경영진의 경영활동 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한다.
- ② 이사의 보수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 제 3장 감사

#### 제 12조 [감사]

- ① 회사는 감사를 1인 이상을 두며, 감사 중 1인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 ② 감사는 관련 법령, 정관 및 이사회규정에 따라 아래의 기능을 수행한다.
  -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활동에 대한 적법성 감사
  - 기업재무활동에 대한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 외부감사인 선정, 변경, 해임 등
- ③ 감사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 제 13조 [외부감사인]

-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3. 지배구조

---

- ②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시 회사의 부정행위 또는 법규 위반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중에 확인한 주요사항을 상근감사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4장 이해관계자

### 제 14조 [윤리경영]

- ① 회사는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이를 게시한다.
- ② 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규범을 모든 경영활동에서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 제 5장 시장에 의한 경영 감시

### 제 15조 [공시]

- ①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기업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성실하며 정직하게 공시한다.
- ② 회사는 정기공시 이외에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적시에 명확하게 공시한다.
- ③ 회사는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을 것이며, 이해관계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 제 16조 [기업 경영권 시장]

- ① 회사의 인수, 합병, 분할, 및 주요 사업의 양수도 등 회사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3. 지배구조

(2) 이사회

• 이사회 구성 개요

2021년 6월 30일 현재 당사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 등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며, 선임할 이사 후보자는 사내이사는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주주총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성명  | 재임기간          |           | 참석률  | 주요이력                                                                                |
|------|-----|---------------|-----------|------|-------------------------------------------------------------------------------------|
|      |     | 최초선임          | 임기만료      |      |                                                                                     |
| 사내이사 | 서영범 | 2018년 03월 16일 | 2022년 03월 | 100% |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br>現) ㈜세아특수강 대표이사<br>前) ㈜세아홀딩스 대표이사<br>前) 삼성전자 시스템 LSI지원팀 담당임원         |
|      | 이강현 | 2021년 03월 19일 | 2023년 03월 | 100% | 한국과학기술원 경영정책학 석사<br>現) ㈜세아특수강 경영지원부문장<br>前) 세아홀딩스 전략기획담당<br>前) GE Korea GrowthTeam장 |
| 사외이사 | 이후동 | 2021년 03월 19일 | 2023년 03월 | 100%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br>日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 석사<br>現)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사외이사 임기는 최대 6년으로 제한

• 이사에 대한 추천인 및 활동분야

| 이사<br>성명 | 추천인             | 활동<br>분야      | 최대 주주 또는 주요<br>주주와의 관계 | 회사와의<br>거래 | 임기            | 연임<br>여부   |
|----------|-----------------|---------------|------------------------|------------|---------------|------------|
| 서영범      | 이사회             | 총괄            | 없음                     | 없음         | 2년<br>(2022년) | 연임<br>(1회) |
| 이강현      | 이사회             | 경영기획<br>글로벌영업 | 없음                     | 없음         | 2년<br>(2023년) | -          |
| 이후동      | 사외이사후보<br>추천위원회 | 사외이사          | 없음                     | 없음         | 2년<br>(2023년) |            |

### 3. 지배구조

#### (2) 이사회

##### • 이사회 활동 현황

2020년 당사의 이사회는 총 24회 개최되었으며,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의 출석률은 100% 입니다. 또한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이후 30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으로 이사회운영 규정에 정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내이사 |      | 사외이사 |
|----|------------|--------------------------------------------------------------|------|------|------|
|    |            |                                                              | 전주병  | 서영범  | 이규화  |
|    |            |                                                              | 찬반여부 | 찬반여부 | 찬반여부 |
| 1  | 2020.01.06 | 2019년 임원 성과 상여 지급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2  | 2020.02.03 | 2019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br>제34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결의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3  | 2020.03.12 | 제34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br>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 찬성   | 찬성   | 찬성   |
| 4  | 2020.03.20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5  | 2020.03.25 | 운영자금 차입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6  | 2020.03.27 | 외화자금보증 신규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7  | 2020.04.08 | 일반자금대출 신규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8  | 2020.04.10 | POS-SeAH Steel Wire(Tianjin) Co., Ltd. 차입금 보증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9  | 2020.04.16 | POS-SeAH Steel Wire(Nantong) Co., Ltd. 차입금 보증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10 | 2020.04.29 | 생산중단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11 | 2020.05.08 | 일반자금대출 신규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12 | 2020.05.22 | POS-SeAH Steel Wire(Tianjin) Co., Ltd. 차입금 보증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13 | 2020.05.28 | POS-SeAH Steel Wire(Thailand) Co., Ltd. 차입금 보증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14 | 2020.06.04 | POS-SeAH Steel Wire(Nantong) Co., Ltd. 차입금 보증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15 | 2020.06.11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연장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16 | 2020.06.18 | 하나은행 여신약정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17 | 2020.07.02 | POS-SeAH Steel Wire(Nantong) Co., Ltd. 차입금 보증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18 | 2020.08.25 | POS-SeAH Steel Wire(Tianjin) Co., Ltd. 차입금 보증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19 | 2020.09.16 | POS-SeAH Steel Wire(Tianjin) Co., Ltd. 차입금 보증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20 | 2020.09.28 | 2020년 4분기 내부거래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21 | 2020.10.28 | POS-SeAH Steel Wire(Nantong) Co., Ltd. 차입금 보증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22 | 2020.11.27 | POS-SeAH Steel Wire(Tianjin) Co., Ltd. 차입금 보증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23 | 2020.12.16 | POS-SeAH Steel Wire(Thailand) Co., Ltd. 차입금 보증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 24 | 2020.12.29 | 2021년 1분기 내부거래 승인의 건                                         | 찬성   | 찬성   | 찬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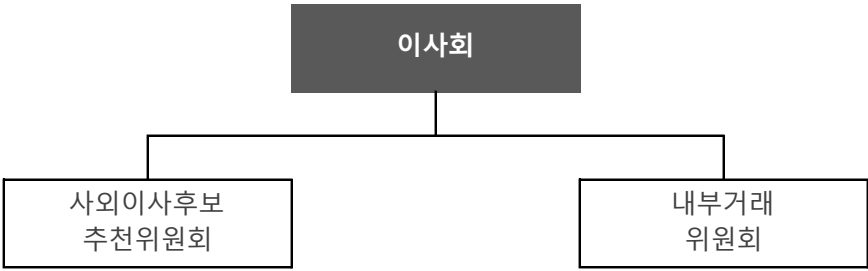
※ 2021년 3월 19일 제35기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이강현 사내이사 및 이후동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였습니다.



3. 지배구조

(3) 이사회위원회

• 구성현황



• 상세현황 및 주요활동 내역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서영범(위원장, 사내), 이후동(위원, 사외)  
역할 :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주요활동내역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2021. 02. 04 | 사외이사 후보선정 | 가결   |

내부거래위원회

구성 : 서영범(위원장, 사내), 이후동(위원, 사외)  
역할 : 내부거래의 투명성 확보  
특수관계인간 거래의 주요사항을 사전심의 및 점검  
주요활동내역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2020. 09. 28 | 2020년 4분기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2020. 12. 29 | 2021년 1분기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2021. 03. 30 | 2021년 2분기 내부거래 승인의 건 | 가결   |

### 3. 지배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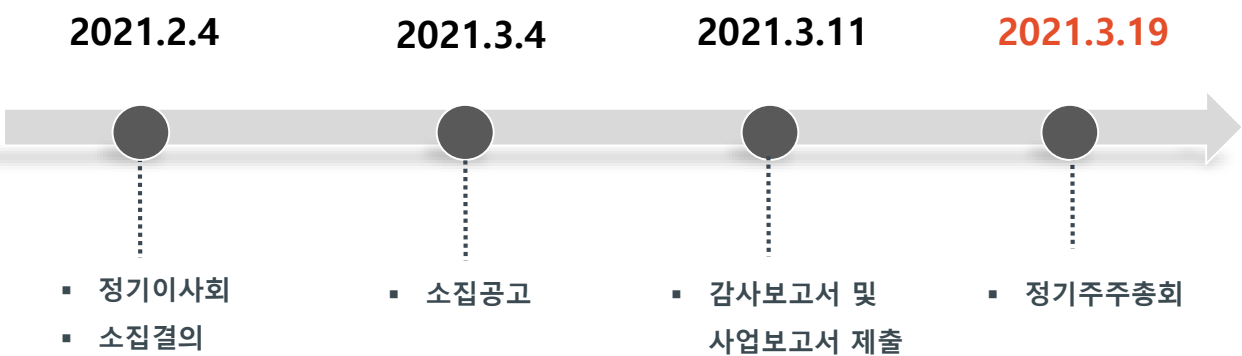
#### (4)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현황

• 제 35기 정기주주총회 결과(2021. 03. 19)

| 진행 상세현황    |                                                                                                          |
|------------|----------------------------------------------------------------------------------------------------------|
| 일시         | 2021년 3월 19일(금요일) 오전 10시                                                                                 |
| 장소         | 세아특수강 본사 대강당(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로 40)                                                                         |
| 참석 주주(주식)수 | 총주식수 : 8,570,000주<br>의결권 주식수 : 8,356,269주 (자기주식 213,731주 제외)<br>참석 주식수 : 5,946,015주 (의결권 주식수中 71.16% 참석) |

| 의안 및 결과  |         |                                            | 결과   | 찬성률    |
|----------|---------|--------------------------------------------|------|--------|
| 부의<br>안건 | 제 1호 의안 | 제3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br>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99.87% |
|          | 제 2호 의안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일부 변경의 건                        | 원안가결 | 99.87% |
|          |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1명)                 | 원안가결 | 99.87% |
|          |         | 제3-1호 의안. 이강현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원안가결 | 99.87% |
|          |         | 제3-2호 의안. 이후동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원안가결 | 99.87% |
|          | 제 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99.87% |
|          | 제 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99.87% |

• 정기주주총회 진행 일정



3. 지배구조

(5)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추이

회사는 배당을 주주에 대한 이익환원의 기본형태로 보고, 회사의 이익규모,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 재무구조의 건전성 유지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핵심사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통하여, 기업 내부의 재무구조 개선 및 주주의 배당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배당 수준을 유지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 구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2017년  | 2016년  |     |
|----------------|---------|--------|--------|--------|--------|-----|
| 주당액면가액(단위 : 원) | 5,000   | 5,000  | 5,000  | 5,000  | 5,000  |     |
| (연결)당기순이익(백만원) | (4,413) | 10,971 | 11,162 | 23,708 | 23,610 |     |
| (별도)당기순이익(백만원) | (1,855) | 11,949 | 12,108 | 24,118 | 24,545 |     |
| (연결)주당순이익(원)   | (526)   | 1,304  | 1,325  | 2,814  | 2,802  |     |
| 현금배당금총액(백만원)   | 4,369   | 7,572  | 7,576  | 6,318  | 6,318  |     |
| (연결)현금배당성향(%)  | -       | 69.00  | 67.90  | 26.65  | 26.76  |     |
|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 5.7    | 6.4    | 5.9    | 3.6    | 3.3 |
|                | 우선주     | -      | -      | -      | -      | -   |
| 주당 현금배당금(원)    | 보통주     | 700    | 900    | 900    | 750    | 750 |
|                | 우선주     | -      | -      | -      | -      | -   |

주1) 제35기는 당기순손실로 (연결)현금배당성향(%)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주2) 제35기 결산현금배당의 1주당 배당금은 일반주주 700원,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500원을 배당하는 차등배당을 시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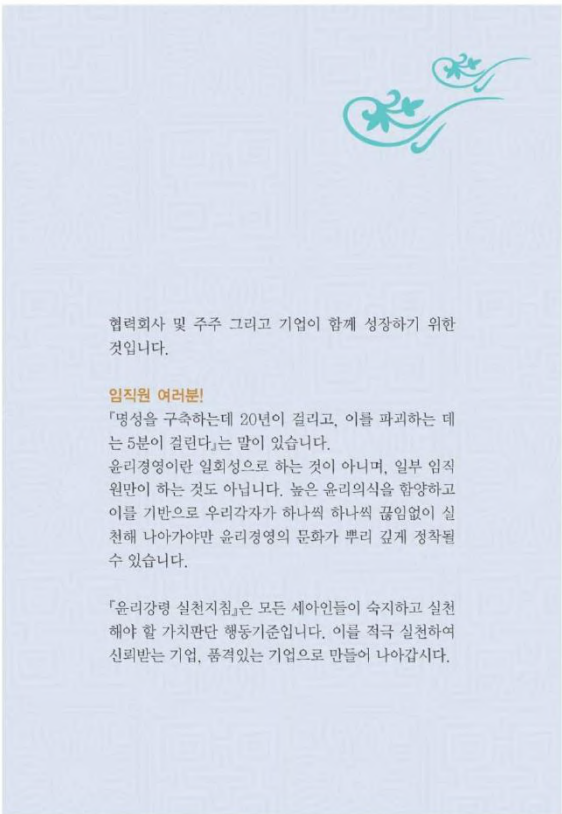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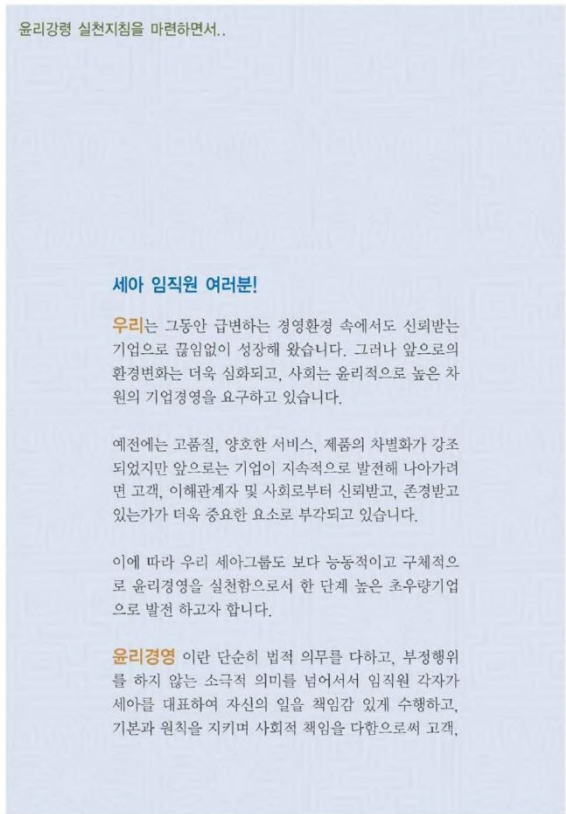
• 과거배당이력

| 연속 결산배당 횟수 | 평균 배당수익률 |        |
|------------|----------|--------|
|            | 최근 3년간   | 최근 5년간 |
| 20기        | 6.0%     | 5.0%   |

주1) 배당수익률 : 제35기 5.7%, 제34기 6.4%, 제33기 5.9%, 제32기 3.6%, 제31기 3.3%

### 3. 지배구조

#### (6) 윤리규정



목·차

1. 윤리경영의 필요성

2. 윤리강령

3. 실천지침

제 1 장. 총 칙 ..... 26

제 2 장.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금품)를 받는 행위 ..... 30

1. 금전 수수(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전 및 선물)

2. 향응 및 접대

3. 편의제공

4. 차용(동산 및 부동산), 부채상환, 보증, 금전대차

5. 미래에 대한 보장(고용 알선, 계약 체결 약속 등)

제 3 장. 거래 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 ..... 46

제 4 장.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 50

1. 불공정 기회 부여

2. 불공정 거래 행위

3. 공급업체 정보유출

제 5 장. 회사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 60

1. 유·무형 자산의 타 용도 사용

2. 공금횡령 및 유용

제 6 장. 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보고 ..... 66

제 7 장. 기타 윤리규범 위반 ..... 68

(직무태만, 관리감독 소홀, 월권행위, 품위유지 등)

제 8 장. 윤리규범 위반 신고 및 조치 ..... 70

【 부 록 】

■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기진단

■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윤리경영의 필요성

**윤리경영이란** 시장의 질서를 준수하는 동시에 사회적 실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경영을 말합니다. 즉, 법·제도의 준수는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책임의 수행, 경영활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문화활동, 기부, 자원봉사 등을 의미.

비록 법적으로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사회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소비자·근로자·투자자 등의 기대, 기준, 가치에 합당하는 행동을 해야 할 책임.

기업의 운영이 공정한 규칙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즉 사회가 법을 통해 만들어 놓은 규범 속에서 기업경영을 해야 할 책임.

사회적으로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적절한 가격에 판매하고, 그 결과 기업을 계속 영위하고 투자자들에게 보상이 가능한 이윤을 창출하는 책임.

**궁극적으로** 윤리경영이 지향하는 바는 기업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고객, 주주, 협력사, 임직원, 지역사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윤리경영이 기업가치, 브랜드이미지 및 기업 명성에 직결된 것임을 기업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윤리경영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출발점이며, 필수 생존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3. 지배구조

#### 윤리 현장

세아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윤리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풍부한 가치를 창조함으로써 고객과 직원, 협력회사 및 주주가 함께 성장, 발전토록 한다.

##### <전 문>

세아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윤리적 기업문화를 기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지향하는 자유시장경제의 질서를 존중하며, 제반 법규정을 준수한다. 이를 통하여 풍부한 가치를 창조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발전함으로써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하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 윤리강령

##### 제 1 장 사회적 책임

세아는 투명한 경영과 합리적 사업 전개를 통해 사회로부터 신뢰 받는 기업시민을 지향한다.

1.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시장질서에 입각하여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의 모든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2.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신고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윤리강령

3.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하며,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다한다.
4.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5.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자원의 낭비적 소모와 공해 및 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윤리강령

##### 제 2 장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세아는 고객과 주주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협력회사와 공동번영을 도모한다.

1.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고객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적극 공개토록 한다.
3. 모든 주주 및 투자자의 권리와 투자수익을 존중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한다.

#### 윤리강령

4. 협력회사와의 모든 거래에 평등한 참여기회와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며,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동반자적 발전을 도모한다.
5. 협력회사의 직원을 존중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 3. 지배구조

윤·리·원·장

SeAH

#### 윤리강령

##### 제 3 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세아는 임직원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고, 회사가 자아실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1.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근무여건을 갖추고,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2.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되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에 대한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한다.
3. 성별, 종교, 연령, 학력, 출신지, 장애여부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으며,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한다.

#### 윤리강령

4. 개인의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하며, 안전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든다.

5. 직원이 경영진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거나 전달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화한다.



18  
·  
19

윤·리·원·장

SeAH

#### 윤리강령

##### 제 4 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세아의 임직원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시탄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세아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2. 공과 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수취하지 않으며, 업무시간이나 회사물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3. 서로를 존중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며, 건전한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윤리강령

4. 사내에서 학연, 지연 등의 파벌을 조성하지 않으며, 임직원 상호간에 금전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직무 수행 중 취득한 고객 및 회사의 사업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20  
·  
21

### 3. 지배구조

#### 윤리강령

##### 부 칙

##### 제 1 조 (시행)

본 윤리강령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2 조 (임직원의 실천)

본 윤리강령의 실천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행동 기준은 각 사별로 제정된 임직원 윤리강령 실천지침에 따른다.

##### 제 3 조 (자문 및 해석)

본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 실천지침'과 관련하여 그 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각사 윤리경영담당부서 또는 윤리경영사무국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 제 4 조 (타 규정과의 관계)

본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 실천지침'은 회사의 타 규정에 우선한다.



## 제 1 장 총 칙

### 1. 목적

본 지침은 윤리강령의 실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용어 정의

- (1) 업무 : 임직원의 직위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직간접의 사무를 말한다.
- (2) 이해관계자 :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와,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의 모든 사람 또는 단체를 칭하며 가족/친인척/지인 등을 통한 수수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 (3) 불가피한 경우 : 본인 부재중 전달되어 거절이 불가능하였거나, 호의에 대해 완강한 거절이 무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 (4) 신고자 : 금품/향응 등의 수수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의 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 1

## 제 장 총 칙



### 1. 목적

본 지침은 윤리강령의 실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용어 정의

- (1) **업무** : 임직원의 직위에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직간접의 사무를 말한다.
- (2) **이해관계자** :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와,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의 모든 사람 또는 단체를 칭하며 가족/친인척/지인 등을 통한 수수도 본인의 행위로 간주한다.
- (3) **불가피한 경우** : 본인 부재중 전달되어 거절이 불가능하였거나, 호의에 대해 완강한 거절이 무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 (4) **신고자** : 금품/향응 등의 수수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의 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 (5) 통상적인 수준

- 1) 정의 : 다른 임직원 또는 비수혜자가 건전한 상식으로 볼 때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 ① 일반인에게 공개되었을 때 정당성이 인정되는 수준
  - ② 수혜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공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범위
- 2) 충족요건
  - ① 상호성, 즉 대등한 관계이어야 한다.
  - ② 상대방이 특별히 거부감을 갖지 않아야 한다.
  - ③ 빈번하거나 주기적, 습관적이지 않아야 한다.
  - ④ 업무상의 중요한 시기, 목적과 연계되지 않아야 한다.
  - ⑤ 호화,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어야 한다.
  - ⑥ 사회적인 미풍양속이나 관습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1

## 총 칙

### 3. 윤리규범 적용 항목

업무 수행시 비윤리적 행동으로 규제의 대상이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이해관계자로부터 사재(금품)을 받는 행위 : 금전 수수, 향응 및 접대, 차용, 부채 상환·보증, 금전대차 및 미래 보장 등
- (2)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 지원 참여 : 상장·비상장 주식 수수 및 투자, 공동투자, 공동 자산취득 등
- (3)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 불공정한 기회 부여, 불공정 거래행위, 공급 업체의 정보 유출 등
- (4)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 유·무형 자산의 타 용도 사용, 공공 횡령 및 유용 등
- (5) 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 : 문서, 계수의 조작 및 변조, 허위 보고 행위 등
- (6) 기타 : 직무태만, 관리감독 소홀, 월권행위, 품위손상 등



# 2

##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금품)를 받는 행위



### 1. 기본원칙

- (1)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사례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되며, 선물을 줄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한다.
- (2)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사례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고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3) 임직원의 가족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
- (4) 사례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유형들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일반적 상식에서 뇌물 수수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 1) 금전수수(유가증권을 포함한 금전 및 선물), 향유 및 접대, 편의 제공
  - 2) 차용(동산 및 부동산), 부채 상환 또는 보증 및 금전대차
  - 3) 미래에 대한 보장(퇴직 후 고용 및 취업 알선 약속, 거래 계약 체결에 대한 약속 등)

### 2. 사례(금품)의 형태 및 윤리규범

- (1) 직접 수수
  - 1) 본인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직접 금품을 받는 경우
  - 2) 가족, 친지, 친구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대리 수령하여 본인에게 전달되는 경우
- (2) 간접 수수
  - 1) 상위자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하위자에게 줄 경우
  - 2) 하위자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상위자에게 줄 경우
  - 3)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동등 직위간 주고 받을 경우
- (3) 윤리규범 위반 여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윤리규범 위반으로 본다.



# 2

##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금품)를 받는 행위

### 3. 금전 수수(유가증권, 금전 및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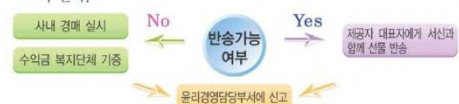
#### (1) 대상행위 및 판단 기준

| 구분   | 예시 항목                                            | 행동원칙                 | 판단 기준                                         |
|------|--------------------------------------------------|----------------------|-----------------------------------------------|
| 선물   | 골프연습장, 헬스클럽 이용권, 상품권, 관람권, 물품 등 기타 만족 및 할인 혜택 포함 | 신고                   | 한도 : 1회 5만원 이하 (만족 및 할인 혜택은 누구에게나 허용된 경우에 한정) |
| 금전   | 현금, 수표 및 기타 유가증권                                 | 금지                   | 금지                                            |
| 경조금  | 경조금, 경조 물품 (화환, 들 받지 등)                          | 의도적告知 금지<br>한도 초과 금지 | 사회통념상 경조금, 경조물품은 10만원 이내로 한다.                 |
| 비용부담 | 접대비, 회식, 기타 개인성 경비를 이해관계자에 부담하는 행위               | 금지                   | 불가피한 경우 사후 환불                                 |

#### (2) 선물 수수시 행동지침

- 1) 이해관계자가 선물을 줄 경우에는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한다(만족이나 할인혜택 등의 경우도 누구에게나 허용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으나, 의도적인 혜택인 경우 선물로 간주한다).

- 2) 이해관계자로부터 선물이 주어진 사실을 본인이 알지 못한 경우가거나, 즉시 거절 또는 돌려주는 것이 무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 ①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상사에게 구두보고후 개인소지 가능하다.
  - ② 5만원 초과한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 「금품수수 신고서」(양식 73page)를 작성 상사결재후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기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윤리경영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2

###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금품)를 받는 행위

#### (3) 금전 수수시 행동지침

- 1) 이해관계자가 금전을 줄 경우에는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되며, 정중하게 거절하거나 되돌려 주어야 한다.
- 2) 3일 이내 「금품수수 신고서」에 의거 신고를 해야 하고 금전 제공자의 대표자에게 서신과 함께 송금 또는 반환한 후 영수증을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경조금 처리 행동지침

- 1)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일반적인 범위 내의 경조금은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조금, 경조물품은 10만원 이내로 한다.
  - ① 경조금 : 임직원 본인 및 자녀의 결혼 축의금, 직계 가족(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조의금에 한해 10만원 이내의 현금 수수를 허용한다.
  - ② 경조물품, 경조사 및 승진축하 등의 화환은 10만원 이내로 한다. (예열사간 경조사, 승진축하 등과 관련된 화환수수를 금한다)
- 2) 이해관계자로부터 받는 경조금의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

위를 초과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경조 사실을 사전 고지하여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경우는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단,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내 게시판에 의한 게시는 무방하다)

- ① 안내장을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거나 발송(e-mail, 우편, FAX 등)하는 행위
- ②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행위
- ③ 경조사 내용을 본인이 직접 얘기하거나 상사, 동료, 부하를 통해 공공연히 알리는 행위

#### (5) 비용 부담의 금지

- 1) 거래선 접대 또는 부서 회식 등에 이해관계자를 불러내어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영수증을 건네 주고 돈을 받아서는 안된다.
- 2) 부서 회식 등의 장소에서 이해관계자와 우연히 만나게 되어 이해관계자가 먼저 비용을 계산했을 경우 상사에게 보고하고 회사 경비로 처리한 후 이해관계자에게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 2

###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금품)를 받는 행위

#### 4. 향응 및 접대

##### (1) 대상 행위 및 판단 기준

| 구분    | 예시 항목                                               | 행동원칙     | 판단 기준                              |
|-------|-----------------------------------------------------|----------|------------------------------------|
| 식사    |                                                     | 한도 초과 금지 | 한도 : 1인당 5만원 이하                    |
| 불건전업소 | 음주,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안마사, 고급 이발소, 고급 사우나, 기타 호화/사치 유흥업소 | 금지       | 금지                                 |
| 오락    | 고스름, 카지노                                            | 금지       | 금지                                 |
| 스포츠   | 골프, 스키                                              | 금지       | 회사에서 승인한 공식적 모임의 이해관계자와의 접대성 모임 금지 |

##### (2) 향응 및 접대 처리 행동지침

- 1) 상사의 승인을 받아 업무 협조를 위한 식사 등 관습적인 비즈니스 접대를 받을 수는 있으나, 금액이 합리적이며 법적 또는 업무 관행상

금지된 것이 아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 2) 업무 협조를 위한 식사라도 접대의 수준이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거나 금지된 항목의 향응 접대로 변질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이를 회피하거나 제재하여야 한다.
- 3) 공식적인 모임 또는 회사가 사전 승인한 경우 이외에 이해관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골프, 스키 등의 스포츠 행사를 통한 향응이나 접대를 받아서는 안된다.
- 4)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향응 및 접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금품수수 신고서」를 이용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1인당 5만원 이하 범위내의 간단한 식사는 예외로 한다.
- 5) 본인이 업무 협조를 위한 일반적인 식사인지 향응 접대인지 판단하기 힘들 경우에는 윤리경영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거나,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 결과를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금품)를 받는 행위

5. 편의제공

(1) 대상 행위 및 판단기준

| 구분              | 예시 항목                                                                 | 행동원칙                   | 판단 기준                                       |
|-----------------|-----------------------------------------------------------------------|------------------------|---------------------------------------------|
| 출장지원            | 교통편의(철도/항공/버스 승차권, 차량지원 등) 숙박편의(숙박, 식사 지원 등)                          | 편의 수혜시<br>정당한 대가<br>지불 | 이해관계자의 편의 제공에<br>대한 실비 지불                   |
| 개인휴가<br>지원      | 개인의 휴가에 교통편의, 숙박<br>편의 제공 및 관광 안내 등                                   | 금지                     | 금지                                          |
| 사무실<br>비용<br>비품 | 부서 이전 비용 지원 사무용비품<br>(복식계, 거울, 휴지 등)                                  | 금지                     | 불가피한 경우 10만원<br>이내 허용                       |
| 협찬/찬조           | 부서 내 행사의 협찬(금전, 물품,<br>교통편의 등)업무와 무관한 이해<br>관계자의 초청 행사(국내·외<br>세미나 등) | 금지                     | 회사 사전 승인 외 초청<br>금지 및 이해관계자의 초청<br>행사 참여 금지 |

(2) 출장 및 개인휴가 지원시 행동지침

- 1) 임직원은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이해관계자에게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편의의 제공을 받아서는 안된다.
- 2) 교통/숙박 편의를 제공받고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공자 대표자 앞으로 송금하고 입급표 사본을 경위서에 첨부하여 상사의 결재를 받은 후 윤리경영담당부서로 신고한다.

(3) 사무용 비품 제공시 행동지침

- 1) 사무실 이동, 부서 이동 등의 경우에 이해관계자로부터 찬조(현금, 물품)를 받아서는 안된다.
- 2)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사무실 이동, 부서 이동 사실을 통보할 때에는 안내문 등에 금품을 사양한다는 내용을 게재하여 이해관계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3) 부득이 사무용 비품을 수령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10만원 이하 상당의 소액의 물품(복식계, 화분, 거울 등)에 한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되돌려 주고 절차에 따라 신고한다.

# 2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금품)를 받는 행위

(4) 협찬/찬조 제공시 행동지침

- 1) 야유회, 체육대회, 워크샵 등의 사내 행사시 이해관계자로부터 현금, 물품, 교통 등의 협찬을 제공 받아서는 안된다.
- 2) 행사 내용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전에 고지하는 행위도 협찬을 받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간주한다.
  - ① 이해관계자에게 행사관련 사항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여 부담을 주거나 이해관계자가 볼 수 있는 사내 게시판 등에 게재하는 행위
  - ② 행사 안내장을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 3) 행사 성격상 이해관계자를 초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되 초청시 이해관계자에게 찬조금(금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통보하여 행사 참석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 4) 이해관계자가 현금 및 10만원 초과 물품을 가져온 경우에는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하며, 부득이 수령할 수 밖에 없거나 10만원 이하의 물품을 받은 경우 행사 책임자는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회사방침을 설명하여야 한다.

- 5) 이해관계자가 주회하는 행사의 경우 업무 목적이어야 하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참여 가능하나 업무 목적을 벗어나거나 편의의 제공, 제대로 변질될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회피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향응 접대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금품 수수 처리 방법에 준하여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금품)를 받는 행위

#### 6. 차용(등산 및 부동산), 부채상환, 보증, 금전대차

##### (1) 대상 행위 및 판단 기준

| 구분                   | 예시항목                                                                            | 행동원칙 | 판단기준 |
|----------------------|---------------------------------------------------------------------------------|------|------|
| 차용/<br>저가매입/<br>고가매도 | • 동산·부동산 등 이해관계자의<br>자산을 임차, 담보설정, 무상<br>수수, 저가 매입 등<br>• 임직원 개인소유 자산의 고가<br>매도 | 금지   | 금지   |
| 부채상환                 | • 신용카드 대금, 외상대금, 대출금<br>등 개인부채의 결제 또는 대리<br>상환                                  | 금지   | 금지   |
| 보증                   | • 대출에 대한 보증요구 또는 보증<br>제외                                                       | 금지   | 금지   |
| 금전대차                 | • 이해관계자의 금전을 빌리거나<br>빌려주는 행위, 그에 따른 이자<br>지급이나 수취                               | 금지   | 금지   |

##### (2) 차용/저가 매입/고가매도 행동지침

- 1) 임직원 및 그 가족의 편의나 영리를 위해 이해관계자에게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된다.
- 2) 동산·부동산을 무상으로 수수하거나 정상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금지하며, 이러한 모든 행위는 금전수수로 간주한다.
- 3) 임직원 소유의 동산·부동산을 이해관계자에게 정상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 역시 금전수수로 간주하여 엄격히 금지한다.

##### (3) 부채상환 및 대출 보증 행동지침

- 1) 대리결제 : 이해관계자에게 본인 및 가족, 직원들의 부채(카드대금, 외상값, 대출금 등)에 대한 결제, 상환, 보증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가 제의하는 결제, 상환, 보증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금지한다.
- 2) 대출보증 : 본인 및 가족, 직원 등의 대출시(대출기관이 금융기관 기타 어떤 형태이든 불문) 이해관계자에게 그 보증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의 보증 제의를 받아들이는 행위를 금지한다.

## 2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금품)를 받는 행위

##### (4) 금전 대차 행동지침

- 1) 임직원 및 그 가족이 이해관계자와 서로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 2) 금전 대차 행위 자체 및 그에 따른 이자 지급 또는 수취 등은 이유를 불문하고 금전수수로 간주한다.

#### 7. 미래에 대한 보장(고용 알선, 계약 체결 약속 등)

##### (1) 대상 행위 및 판단 기준

| 구분      | 예시항목                                         | 행동원칙 | 판단기준 |
|---------|----------------------------------------------|------|------|
| 고용알선    | 이해관계자로부터 퇴직후 고용<br>보장, 취업 알선의 약속 등을<br>받는 행위 | 금지   | 금지   |
| 계약체결 약속 | 퇴직후 거래 약속의 체결 등                              | 금지   | 금지   |

##### (2) 행동지침

- 1) 퇴직 후 고용 및 취업 알선 약속 :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고용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떠한 형태의 약속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제의를 받아서는 안된다.
- 2) 거래 계약 체결에 대한 약속 : 이해관계자에게 퇴직 후 거래 체결 등 어떠한 혜택을 보장하는 약속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의를 수용해서는 안된다.
- 3) 이해관계자로부터 고용 보장이나 거래 약속 등의 제의를 받을 경우 즉시 상사에게 보고후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거래 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

### 1. 기본원칙

- (1)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업체의 상장·비상장 증권에 대한 부당한 지분 취득은 절대로 안된다.
- (2) 이해관계자와의 공동 투자 및 공동 재산 획득은 부당한 행위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실질 지분 소유 관계에 근거하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간주한다.
- (3) 부당 지분 참여의 기본적인 유형들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이해관계자와 관계된 모든 공동 재산 취득행위를 포함한다.
  - 1) 상장·비상장 주식수수 및 투자
  - 2) 동산/부동산의 공동 투자, 공동 재산 취득

### 2. 부당 지분 참여의 형태 및 윤리규범

- (1) 직접 지분 참여
  - ① 본인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직접 주식을 증여 받거나 투자하는 경우

- ② 본인이 이해관계자와 공동의 투자를 통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2) 제3자를 통한 지분 참여

- ① 가족, 친지, 친구의 명의를 이용하여(차명) 이해관계자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 ② 가족, 친지, 친구들에게 권유하여 이해관계자의 주식을 취득케 하거나 투자토록 하는 경우

#### (3) 윤리 규범 위반 여부

직접 투자 또는 제3자의 명의를 통한 주식 투자 또는 공동 재산취득은 원칙적으로 모두 윤리규범 위반으로 본다. 또한 본인의 직접적인 이익 취득 목적이 아니라 제3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관계상 이해관계자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경우 부당 지분 참여로 간주하여 윤리규범 위반으로 본다.

### 3. 공동투자 및 공동재산 취득금지

- (1) 임직원 및 그 가족이 이해관계자와(목적 여하에 관계없이)자금을



## 3 거래 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

공동 투자하여 동산,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상당한 금액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간주한다.

- (1) 콘도·골프·헬스클럽 회원권, 부동산 등 공동의 명의로 된 자산 및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도 실질적인 지분 소유 관계에 있는 자산은 전부 해당된다.
- (2) 회사와의 거래 관계 前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 공동 투자가 진행된 경우 관련 사실을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신고하고 본인 지분을 정리하여야 한다.
- (2) 임직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명의로 이해관계자와 공동 투자를 통해 회사와 거래 관계를 맺는 협력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
- (3) 공동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자의 회사에 이사로 등재되거나, 겸직 행위 및 실질적으로 해당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여 거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경우도 엄격히 금지한다.



## 제 4 장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 1. 기본 원칙

- (1) 협력회사와의 거래에 있어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 (2) 거래 공급업체는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근거하여 최상의 공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대량 구매 계약뿐만 아니라 간단한 서비스 계약까지를 포함한 모든 거래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 (3) 협력회사와의 거래 조건에 대한 제한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명백하고 타당한 사유 및 투명한 절차에 의해 진행하여야 한다.
- (4)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평등, 부당 대우, 불친절한 거래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 (5) 협력회사 관계의 기본적인 불공정 유형들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모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포함한다.
  - 1) 불공정 기회 부여
  - 2) 불공정 거래 행위
  - 3) 공급업체 정보 유출

### 2. 공정 거래를 위한 윤리규범

#### (1) 공정 거래 관련 윤리규범 실천 대상자

- 1) 구매/용역 업무와 관련된 구매부서의 구성원 및 위임 발주 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자
- 2) 구매/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구매품목의 입고(투입), 검수, 대금 지불 등의 업무 수행자
- 3) 특정 구매 품목의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 개발 등의 관련 업무 수행자
- 4) 기타 관련 업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모든 임직원

#### (2) 윤리규범 위반여부

협력회사와의 거래에 있어 명시적인 거래 규정 및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해명되지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윤리규범 위반으로 본다. 또한 본인의 직접 업무가 아님에도 관련 부서를 통해 이해관계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중대한 윤리규범 위반으로 본다.

## 4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 3. 불공정 기회 부여

#### (1) 대상 행위 및 판단 기준

| 구 분    | 예 시 항 목                                                     | 행동원칙 | 판 단 기 준 |
|--------|-------------------------------------------------------------|------|---------|
| 거래거절   |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 참여의 거절, 기회 박탈                                | 금지   | 금지      |
| 참여의 제한 | • 배타적인 거래조건 설정, 근거 없이 거래 지역 설정, 거래 상대방의 한정                  | 금지   | 금지      |
| 차별     | • 가격 차별, 거래 조건의 차별적 적용<br>• 특정업체에 대한 특별 부여 (높은 단가, 거래 조건 등) | 금지   | 금지      |

#### (2) 행동지침

- 1) 협력회사의 선택·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임직원이 특정한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반대로 차별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시도하여서는 안된다.

- 2) 협력회사에게는 회사에서 규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기회 및 조건을 부여하여야 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제반 불공정 거래 행위는 물론 회사 규범을 위반하는 어떠한 부당한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

- 3) 불가피하게 협력회사와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확보되어야 하며, 특정 협력회사에만 기회를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① 거래의 거절 :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또는 참여 자격에 대한 회사 규정의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 ② 참여의 제한 : 특정 협력회사를 선정 또는 기피 업체를 배제시키기 위하여
  - 가격, 품질 등의 거래 조건을 배타적으로 설정하는 경우
  - 납득할 만한 근거 없이 거래 지역을 한정하는 경우



# 4

##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 불명확한 사유로 거래 상대방을 한정하는 경우
- ③ 차별 : 선호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기피 업체에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 납품 가격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품질 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
  - 거래 물량을 임의적으로 조정하거나 거래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경우
  - 특히,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전혀 기여가 없으면서도 기존 업체의 보호, 퇴직자 등의 관련 업체를 우대하거나 학연/지연 관계를 선호하는 경우
- 4) 불가피하게 협력회사와의 거래를 제한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면 회사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상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 4. 불공정 거래 행위

#### (1) 대상 행위 및 판단 기준

| 구분   | 예시 항목                                                                                                 | 행동원칙 | 판단 기준                  |
|------|-------------------------------------------------------------------------------------------------------|------|------------------------|
| 부당거래 | • 일방적 납품, 물량 조절, 부당 저가 매입, 계약 조건의 일방적 변경, 대금 결제의 고의적 지연, 부당한 사유로 일방적인 거래 단절<br>• 특정 업체에 대해서만 부당 고가 매입 | 금지   | 거래 조건의 변경 사유 발생시 사규 준수 |
| 부당지원 | • 부당한 자금, 인력, 자산 지원                                                                                   | 금지   | 금지                     |
| 사업방해 | • 부당한 기술 이용, 협력회사 인력의 부당채용, 경쟁업체와의 거래 방해, 기타 사업활동 방해                                                  | 금지   | 금지                     |

# 4

##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 (2) 행동지침
- 1) 거래 중인 협력회사와는 동반자적 관계를 통한 공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며, 회사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일방적인 거래 관계를 설정하거나, 특정 협력회사에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어 피해를 입게 해서는 안된다.
- 2) 협력회사의 선택·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임직원이 특정한 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반대로 차별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시도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 3) 협력회사에게는 회사에서 규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기회 및 조건을 부여하여야 하며, 공정 거래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제반 불공정 거래 행위는 물론 회사 규범을 위반하는 어떠한 부당한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
- 4) 불가피하게 협력회사와의 거래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확보 되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파기하거나 의도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① 부당 거래 : 계약기간내 계약조건의 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 조건을 조정하는 행위
  -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 요구하는 경우
  - 납품 물량의 일방적인 조절을 통보하는 경우
  - 세부 계약 사항의 일방적인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 대금 결제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
  - 계약 기간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 ② 부당 지원 : 특정 협력회사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회사에 대해 자금 또는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및 투명한 절차 없이 회사 설비 자산을 이전하거나 저가 또는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 ③ 사업 방해 : 고의적으로 또는 협력회사와 사전 협의 없이 다음 행위를 하는 경우
  - 협력회사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 경쟁업체와의 거래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 4

##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 기타 협력회사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 5) 불가피하게 협력회사와 거래조건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면 회사에서 규정한 절차에 의해 상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에 의거하여 필요시 협력회사와 협의를 갖도록 한다.

### 5. 공급업체 정보유출

#### (1) 대상행위 및 판단 기준

| 구분   | 예시항목                      | 행동원칙 | 판단기준 |
|------|---------------------------|------|------|
| 정보유출 | 협력회사로부터 획득한 제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 | 금지   | 금지   |

#### (2) 행동지침

- 1) 거래관계를 위해 제공된 공급업체의 모든 정보는 공급업체 대표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 2) 특히, 해당 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제공됨으로써 해당 업체의 영업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인력 유출 등의 피해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 5

## 제 5 장 회사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 1. 기본원칙

- (1) 회사의 유·무형 자산 및 기밀정보 등은 회사의 중요한 자산으로 이들 자산은 회사의 사업활동 및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임직원들은 자산의 분실, 오용 및 도난에 대비할 책임이 있다.
- (2) 회사의 비용은 공급으로서 건전한 기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자산형량/유용의 형태 및 윤리규범

#### (1) 자산형량/유용의 형태

- 1) 설비기기 등 회사의 유형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 2) 법인카드, 각종 소모품 등을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개인 용도로 활용하는 행위
- 3) 제품 설계도, 정보시스템 등 기밀정보로 보호되어야 할 회사의 무형

지적자산을 자신이나 타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 (2) 공급형량/유용의 형태

- 1) 회사의 공급을 인출하여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
- 2) 허위 증빙을 통해 회사의 공급을 전용하거나 실질적으로 현금을 취득하는 행위

#### (3) 윤리 규범 위반여부

회사의 모든 자산은 명시적인 회계 지침 및 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해명하지 못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모두 윤리규범 위반으로 본다. 특히 유무형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임직원 자신이나 타 이해관계자의 영리를 목적으로 활용하게 된 경우 및 회사의 공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대한 윤리규범 위반으로 본다.





# 5

## 회사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 3. 유·무형 자산의 타 용도 사용

#### (1) 대상 행위 및 판단 기준

| 구 분           | 예 시 항 목                                                                                            | 행동원칙 | 판 단 기 준 |
|---------------|----------------------------------------------------------------------------------------------------|------|---------|
| 유형자산<br>형평/유용 | • 고정자산 : 토지, 건물, 설비기기 등<br>• 유형고정자산을 사업목적외 전용, 무단 사용, 개인 영리 목적으로 이용<br>• 법인카드 : 비용제정의 전용, 개인 용도 사용 | 금지   | 금지      |
| 무형자산<br>유용    | • 제품설계도의 유출, 영업기밀/사업 정보의 유출, 정보시스템의 유출 등을 통한 자신의 이익 목적에 사용 또는 경쟁업체 제공                              | 금지   | 금지      |

#### (2) 행동지침

- 1) 회사의 모든 자산은 사업활동 또는 회사가 승인한 목적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 2) 특히 법인카드 및 차량이나 PC를 비롯한 각종용품 등의 자산은 업무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되어야 하며, 개인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 3) 정보통신시스템은 사업수행이나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불건전하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오용하거나, 회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밀정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된다.
- 4) 직위, 직무를 이용하여 획득한 정보 또는 지식을 활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중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62  
63

# 5

## 회사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 4. 공금 횡령 및 유용

#### (1) 대상 행위 및 판단 기준

| 구 분           | 예 시 항 목                                                                                                                                                                                                                          | 행동원칙 | 판 단 기 준 |
|---------------|----------------------------------------------------------------------------------------------------------------------------------------------------------------------------------------------------------------------------------|------|---------|
| 공금 횡령<br>및 유용 | • 회사 공금의 무단 인출, 사적인 용품, 회계장부의 조작 등을 통한 개인 착취, 이해관계자에 증여<br>• 허위 영수증을 통한 비용 처리 (개인사용 영수증 등)<br>• 무중벌 비용 제도의 악용<br>• 개인 용품 또는 회계처리가 어려운 절대성 경비 등을 다 계정의 비용으로 합산 처리<br>• 회사 법인카드를 가족/친지에게 제공하여 무단 사용<br>• 기타 회사 경비처리 기준에 반하는 사적인 집행 | 금지   | 금지      |

#### (2) 행동지침

- 1) 공금을 가로채어 축내는 행위, 공금을 사사로이 다른곳에 돌려 쓰는 행위 등은 절대로 불허한다.
- 2)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허위 청구서의 제출로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64  
65

## 제 6 장 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

### 1. 기본 원칙

- (1) 모든 정보의 기록과 보고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2)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사실과 다른 문서, 계수의 조작·변조는 상사나 관련 부서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관을 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크게 해칠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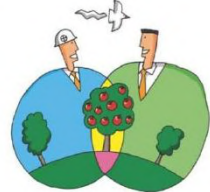
### 2. 행동지침

#### (1) 문서·계수의 조작 및 변조

- (1) 임직원이 정보를 기록하고 회사에 제출하는 일정한 종류의 모든 문서 및 계수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2) 상사가 문서 또는 계수에 대한 조작을 지시하거나, 또는 하급자가 이러한 지시가 명백히 부정행위를 알고도 용인하는 것은 동일한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 (2) 허위보고

- (1) 회사 내에 경영진이나 경영진단 조직 또는 회사 외부조직이나 사람들에게 허위 보고를 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로 엄격히 금지한다.
- (2)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허위로 설명하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3) 직접적인 허위 보고 이외에도 정보 수령자가 오해를 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를 조작하는 것도 이와 동일한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 제 7 장 기타 윤리규범 (직무태만, 관리 감독 소홀, 월권행위, 품위 유지 등)

### 1. 기본 원칙

- (1) 임직원들은 직위, 직책상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선명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2) 임직원들은 회사 외적인 사생활에 있어서도 제아인으로서 언행과 품행에 최선을 다하여 회사의 명예를 지키도록 해야 하며 윤리규범에 어긋나는 기본적인 유형들은 아래와 같다.

- 1) 직무태만
- 2) 관리 감독 소홀
- 3) 월권행위
- 4) 품위 손상

### 2. 행동지침

- (1) **직무 태만** : 직위/직책상 업무 규정에 명시되어(또는 업무의 지시를 받고 책임을 부여받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 (1) 임직원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2)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회사의 규정과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 (3) 임직원은 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상하·동료·부서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
- (2) **관리 감독 소홀** : 업무 수행을 책임지는 선명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 1) 임직원은 직위/직책상 주어진 직무수행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 2) 임직원은 업무 수행에 있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수시로 주의를 기울이며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 3) 특히, 관리자의 경우 부하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3) **월권행위** : 임직원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직위/직책상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명예를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 1) 상사는 부하에게 회사나 업무 목적과 무관한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해서는 안된다.
  - 2) 임직원은 회사의 규정에 반하거나 자신의 업무 권한과 책임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전달해서는 안된다.



### 3. 지배구조

## 8 장 윤리규범 위반 신고 및 조치

## 1. 행동지침

- (1)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임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행동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게 된 경우 또는 불가피하게 자신이 윤리규범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특히 금품이나 향음 절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상사에게 보고하고 양식 「금품수수 신고서」에 의거하여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윤리경영담당부서로 신고한다.
- (2) 본 규정을 위반시 으메 목적으로 간주한다.
- (3) 보고 및 처리 결과의 내용은 해당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4) 윤리경영담당부서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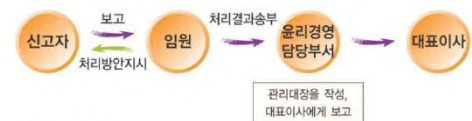
## 2. 신고대상 행위

- (1)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수수시
- (2) 5만원 초과하는 선물 수수시
- (3) 1인당 5만원 초과하는 향응, 접대를 받은 경우



- (4) 교통, 숙박 등 편의제공을 받은후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
- (5) 10만원 초과하는 사무용 비품을 받은 경우
- (6) 고용보장이나 거래약속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
- (7) 본 강령 및 통상적인 윤리규범을 위반한 경우

### 3. 신고절차 흐름



#### 4. 처벌규정

- (1)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윤리규범에 위배되는 행동이 발견되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처벌 규정을 적용한다.

● 윤·리·강·령·심·천·지·침

## 8 윤리규범 위반 신고 및 조치

- (2)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은 후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엄중하게 적용한다.
- (3) 자신이 직접 윤리규범을 위반하지 않았으나 관련 사실을 알고도 방조하거나 묵인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 (4) 처벌의 정도는 위반 사실의 중증도를 판단하여 윤리경영담당부서에서 품의, 인사규정의 처분에 따라 조직한다.

## 5. 윤리위반자 사후 조치

- (1) 부정·비리와 관련된 협력회사로 등록될 경우, 세아의 어떤 회사와도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 (2) 세아로부터 부정·비리와 연관된 정계를 받은 임직원이 근무하는 업체도 세아의 어떤 회사와도 당해 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신규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단, 불가피하게 계속 거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반드시 득해야 한다.

## 금품 (향응) 수수 신고서

|    |    |    |    |
|----|----|----|----|
| 담당 | 팀장 | 임원 | 사장 |
|    |    |    |    |

1. 제공받은자

|       |  |     |  |
|-------|--|-----|--|
| 회 사 명 |  | 직 위 |  |
| 팀(부서) |  | 성 명 |  |

## 2. 신고내용

| 구 분                        | 내 용 |
|----------------------------|-----|
| 일시 및 장소                    |     |
| 내용(종류, 수량, 금액)             |     |
| 제공자 인적사항<br>(소속, 직위, 성명 등) |     |
| 수수경위(상황설명)                 |     |
| 신고자 처리의견                   |     |
| 임원자시사항                     |     |
| 처리사항 확인                    |     |

신고자

\* 원본을 윤리경영담당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지배구조

#### 부록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기진단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부록

SeAH

####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자기진단

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임직원 자기진단은 여러분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적 책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윤리적 위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어떤 결정을 두고 윤리적인 감동이 느껴질 때 스스로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십시오.

- ① 회사의 윤리행동규범에 맞는 행동인가?
- ② 법적인 문제의 소지는 없는가?
- ③ 시간이 지나도 지금의 결정을 과연 옳다고 느낄 것인가?
- ④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닌가?
- ⑤ 언론에 공개된다면 어떻게 될까?
- ⑥ 내 아이들에게 몇몇한 행동인가?
- ⑦ 상대방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 것인가?
- ⑧ 이해관계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 ⑨ 시간과 자원을 회사를 위해 이용하고 있는가?
- ⑩ 회사와 나를 명예롭게 하는 행위인가?

아직도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확신이 들 때까지 질문을 계속 반복하십시오.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

본인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에게는 정직하고,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호발전을 추구하며, 경쟁사와는 정정당당하게 경쟁  
하고 주주와 사회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  
을 서약합니다.

- 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윤리규범을 준수하며 어떠한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2. 업무 수행과정에서 회사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나, 거래선으로부터 부정·비리행위의 제안을 받았  
을 경우에는 즉시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신고 하겠습니다.
- 3. 윤리규범을 위배하는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 행위어부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조사가 진행될 경우, 회사가 요청하는 관련자료의 제출  
등 모든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 4. 상기 사항을 적극 실천하고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본 서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1부는 회사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  
소 속 :  
성 명 : (서명)